

10070

P. R 필 불필요

자 체 통 제 기안처 건설국 하수과 전화번호 3-9507 근거서류접수일자 동지안 1143.21-2086(63.6.6) 63.6.7.

키수담임 하수파장 건설 국장 제 2 부시장 시 장

판 계 법 제 시정과장 관서 명 문 사 총무과장 내무국장 기획조정

기 안 년 월 일 63. 7. 4. 시 행 년월일 1965. 7. 11 보 존 년 한

분 류 서간하 전체통제 종 결 정 서 기 장

경 수 유 유신조 발 신 참 조

제 목 1963 국유지 개간 예정지 결정 고시

1. 개간촉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일반 개간 예정지중 국유 미간지 61.878평을 증양개간 심의회에 요청 하였는데 63.6.4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국유지의 개간적 부 실이 결과 등지가 있어 그중 39.978평이 개간예정지로 이를 등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함이다.

가. 국유지 개간 예정지 결성 상황

개간예정지 결성지 소재 구획	지구수	면 적 평	
영 등 등	11	26.867	
상 등 등	3	8.611	
상 등 등	1	4.500	
계	15	39.978	523

320

127

7/5. 101. 22

안 2 "고 시 안"

서울특별시고시제 770 호

개간 촉진법 제6조의 개정에 의하여 국유지 개간 예정지
를 다음과같이 결정함.

서기 1963 년 7월 11 일

서울특별시강 순 태 일

1. 국유지 개간예정지 결정 상황

도시계획구	소지자	지목	지번	지적면적	개간예정지 면적	개간예정지 종류	공사비 예산액	예산 비율	개간예정 면적	토지 소유자	비고
명동	구리	부지	없음	2,420	2,420	잡	115,000	50%	282,500	국유	
"	"	"	"	3,200	3,200	"	37,000	"	96,000	"	
"	"	"	"	13,400	2,300	전	24,000	"	99,000	"	
"	"	임	631	3,784	3,784	"	32,000	"	112,520	"	
"	"	잡종지	632	2,740	2,740	"	21,000	"	82,200	"	
"	"	"	647-2	584	584	"	7,000	"	17,520	"	
"	"	"	647-3	237	237	잡	5,000	"	7,110	"	
"	"	"	651-5	675	675	"	15,000	"	20,250	"	
"	신도림	"	285-9	1,681	1,681	전	20,000	"	32,620	"	
"	"	"	286-2	915	915	"	10,000	"	18,300	"	
"	"	"	344-7	821	821	"	4,000	"	6,420	"	

서울특별시 522

128

성증	등	계	방	2	4,550	4,550	전	29,000	"	91,000	"
"	"	"	"	518	795	3,335	"	21,000	"	66,700	"
"	"	"	"	518	144	226	"	8,000	"	14,520	"
신부	부지	부지	부지	144	226	726	"	29,962	"	45,000	"
계	15	15	15	50,078	39,978			399,962	6%이내	1,000,060	총

안 3. "고시 의뢰안"

수신 공보 실장

발신 건설국장

제목 1963 국유지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의뢰

국유지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으니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심을 바랍니다.

유첨 고시문 1부 끝

안 4 "보고안"

수신 농림부장관

발신 시 장

제목 국유지 개간예정지 결정 고시

63. 6. 4 농지안 1143. 2 호로 사달한 분건에 관하여 별지 사와같이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유첨 1. 고시문 (사) 1부

2. 국유지 개간 예정지 결점 상황 보고서 1부 끝

서울특별시 520

129